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62호 2011. 12 27(화)

포항시보

◀ 훈 령 ▶

- 포항시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제244호) 2
- 포항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제245호) 8

◀ 입법예고 ▶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제2011-1230호) 16

◀ 고 시 ▶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제2011-114호) 27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제2011-115호) 29
- 도로명주소 고시(제2011-116호) 30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제2011-117호) 44
-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1-119호)..... 45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011-120호) 50

◀ 공 고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제2011-1224호) 52
- 공 인 공 고(제2011-1233호) 53

회 람									
--------	--	--	--	--	--	--	--	--	--

훈 령

포항시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2월 27일

포항시 훈령 제 244호

포항시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시가” 를 “포항시가” 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시가” 를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비용” 을 “그 밖의 비용”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례금) 수입한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 되었을 때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 단순신청 ○ 변론 있는 신청	20만원 이내 본안사건과 동일	없 음 본안사건과 동일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60만원 이내 15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4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 60퍼센트 이상 승 소 할 경우 착수금 에 승소비용을 곱 한 금액 ※ 구비서류 •청구서 •확정증명원
	3. 중요사건(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내	
	4. 환송심	원심의 2분의 1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과 동일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과 동일 200만원 이내	
	3. 중요사건(민사소송과 같음)	민사소송과 동일	
	4. 환송심	원심의 2분의 1	
기타소송 비 용	1.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기타비용 : 실액 2. 출장비 및 여비 :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단, 6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 청구의 포기, 인낙,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 행정본안 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u>시가</u> 수입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포항시가----- -----</p>
<p>제2조(보수 및 비용의 종류) <u>시가</u> 수입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8. <u>기타비용</u></p>	<p>제2조(보수 및 비용의 종류) <u>포항시(이하 “시”라 한다)</u>가 ----- -----<u>각 호</u>-----</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의 비용</u></p>
<p>제4조(사례금) ① <u>수입한 소송사건이 완전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착수금에 해당하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일부승소인 경우 사례금은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 한하고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액을 지급한다.</u></p>	<p>제4조(사례금) 수입한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u>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u></p>
<p>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민사합의 사건과 <u>시장이</u>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사단독, 행정소송 및 각종 신청 사건은 <u>고문변호사</u>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 -----<u>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수임변호사의 직무) 수임변호사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p>	<p>제8조(수임변호사의 직무) -----</p> <p>---해당-----</p> <p><u>각 호</u>-----</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p>
--	--

현행				개정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내용	착수금	승소사례금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내용	착수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 단순신청 ○ 변론있는 신청	20만원 이내 본안사건과 동일	없음 본안사건과 동일	민사소송	1. 신청사건 ○ 단순신청 ○ 변론있는 신청	20만원 이내 본안사건과 동일	없음 본안사건과 동일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60만원 이내 15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4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60%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60만원 이내 15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4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60퍼센트 이상 승소 경우 착수 비에 승소 비용을 곱한금액	
	3. 중요사건(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내			3. 중요사건(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청구서 · 확정 증명원
	4. 환송심	원심의 2분의 1			4. 환송심	원심의 2분의 1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과 동일	1. 신청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과 동일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과 동일 200만원 이내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과 동일 200만원 이내			
	3. 중요사건(민사소송과 같음)	민사소송과 동일		3. 중요사건(민사소송과 같음)	민사소송과 동일			
	4. 환송심	원심의 2분의 1		4. 환송심	원심의 2분의 1			
기타소송 비용 (<u>신설</u>)	1.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기타비용 : 실액		기타소송 비용	1.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기타비용 : 실액		기타소송 비용		
	2. 출장비 및 여비 :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3급 공무원 해당액			2. 출장비 및 여비 :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3급 공무원 해당액				
<p>※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p>				<p>※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단, 6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 청구의 포기, 인낙,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p>				

1. 개정이유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소송비용기준 중 승소사례금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송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소사례금 관련 규정 보완(안 별표)
 - 화해의 성립, 조정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함
단, 6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 청구의 포기, 인낙,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승소사례금 청구 구비서류를 청구서, 확정증명원으로 함

포항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2월 27일

포항시 훈령 제 245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직무수행태도의 감점기준과 실적가점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기) 연 2회 정기평정 시 적용하되,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은 6월 30일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실적가점심사위원회) ① 실적가점 부여 및 감점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적가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실적가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적가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한 가점부여 여부 심사·의결
- 2. 실적가점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등

③ 실적가점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적가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 1. 중앙단위 표창을 수상한 사람
- 2. 제안채택 창안상을 수상한 사람
- 3. 전국단위 평가 최우수 기관표창에 기여한 사람
- 4. 직무관련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
- 5. 업무추진이 우수한 사람
- 6.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의 실적가점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여하되, 해당직급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실적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타 기관에서 전입한 공무원 중 종전의 기관에서 받은 실적가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직무수행태도 평정 감점) 근무성적평정상의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감점사유 발생시 5점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점 평정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제출 및 확인) ① 실적가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자료를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태도 평정 감점 확인자료는 징계처리대장·경고 등 처분대장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실적가점 항목별 부여기준 및 배점(최고 5.0)

가점항목	부여기준	가점	부여요건
1. 중앙단위 표창 수상	1-1 중앙단위 표창 수상시 • 청백봉사상 • 민원봉사대상 • 훈장 • 포장	1.0점 1.0점 1.0점 0.5점	○ 관련부서 및 개인이 증빙 자료 첨부 신청
2. 제안채택 창안상 수상	2-1 담당업무관련 중앙제안 채택시 • 금 상(1위) • 은 상(2위) • 동 상(3위)	1.0점 0.5점 0.3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제외
	2-2 담당업무관련 자체제안 채택시 • 금 상(1위) • 은 상(2위) • 동 상(3위)	0.5점 0.3점 0.2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제외
3. 전국단위 평가최우수 기관표창	3-1 전국단위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 담당 및 담당자 • 최우수(1위) • 우수(2~3위)	0.5점 0.3점	○ 평정대상기간내 전국단위 기관 평가에서 수상한 경우 ○ 업무분장표 제출
4. 직무관련 특허권 취득	4-1 직무관련 특허권 취득자 • 단독 • 공동	0.5점 0.3점	○ 특허권자가 국내특허에 한함(특허법) 개인명의 제외 ○ 특허권 취득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평정시 신청한 것만 인정
5. 업무추진 우수	5-1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자	0.5점	○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에 탁월한 실적이 인정 된 경우 ※ 기획예산과 확인통보
	5-2 포항시 공무원대상 표창 수상자	0.5점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포항시 공무원 대상 표창 수상자
	5-3 부서별 합동평가 유공자 • 금 상(1위) • 은 상(2위) • 동 상(3위)	0.1점 0.05점 0.03점	○ 합동평가 지표별 심사결과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 기획예산과 확인통보
6. 격무·기피 부서근무자	6-1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 3년 이상 • 2년 이상(1개월 추가시 0.015) • 1년 이상(1개월 추가시 0.015)	0.3점 0.2점 0.05점	○ 2년마다 기피부서 지정 ○ 정기평정일 기준 해당부서 1년 이상 근무자

【별표 2】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최고 5.0)

감 점 사 유		감 점 기 준
징 계 처 분	정 직	1회당 2.0점 (1개월 추가시마다 0.5점가산)
	강 등	1회당 3.0점
	감 봉	1회당 1.5점 (1개월 추가시마다 0.5점가산)
	견 책	1회당 1.0점
직위해제		1회당 1.0점 (1개월 추가시마다 0.5점가산)
경고·훈계		1회당 0.5점
주 의		1회당 0.3점
대민불친절로 인한 경고 등	경고 (훈계)	1회당 0.3점
	주의	1회당 0.2점
복 무 상 태	무단결근	1회당 0.3점
	무단이석	1회당 0.1점(2시간이상)
	무단조퇴, 지각	1회당 0.1점

※ 직무수행태도 평정감점 확인자료는 징계처리대상·경고 등 처분대장에 의한다.

※ 감점기준은 근무성적평정서에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에 적용한다.

【별표 3】

○ 업무추진 실적가점 신청 절차

- ① 개인별 신청서를 평정자에게 제출
 - 동일업무 건일 경우 1명으로 제한
- ② 평정자는 개인별 제출자료 검토 및 의견작성 후 확인자에게 제출
 - 동일업무 건일 경우 1명으로 제한
- ③ 평정단위별 평정자와 확인자의 사전 심의
 - 가점부여 실적에 미흡할 경우 신청 제외
- ④ 가점부여에 적합할 경우 직렬별 우선순위 결정 후 확인자 의견을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

○ 격무기피부서 지정

- 지정기간 : 2년마다 지정
- 지정방법 : 2012. 6월 정기평정부터
 - ① 전자설문 조사 실시(소속공무원 대상)
 - ② 전자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결정
 - ◆ 선정기준
 - 업무량 과중 여부,
 - 해결곤란 민원 다수 여부,
 - 원거리 소재로 출퇴근 불편 등

○ 실적가점 부여 예외사항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관련사항은 가점사유 안됨
(예 - 직무분야 자격증 취득, 학위취득 등)
- 자격증 소지 및 특수지 근무 등 법령상 가점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가점으로 중복 부여불가

【별표 4】

실적가점 신청 및 추천서

○ 기 간 : 2011. 7. 1 ~ 2011. 12. 31(6개월간)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사 유	근거자료
				표창사본, 업무분장등

※ 가점요건 중 업무추진 실적가점 신청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실적가점 신청서서식에 의거 평정단위별 신청절차를 거친 후 제출

2011년 월 일

○ ○ 팀·과장 ○ ○ ○ (인)

1. 제정이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과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에 상응하는 실적가점 부여 및 직무수행태도의 문책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을 마련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2조)
 - 포항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 실적가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기능 대신 할 수 있음.
 - 실적가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한 가점부여 여부 결정
- 실적가점 부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5.0범위 내(승진후보자명부에 직접 적용)
 - 가점부여 대상
 - 중앙단위 표창수상자, 제안채택 창안상 수상자, 전국단위 평가 우수기관
 - 표창, 직무관련 특허권 취득자, 그 밖에 업무추진 우수자
 -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
 - * 격무·기피부서 지정(지정기간 - 2년마다)
 - ▶ 공무원대상 전자설문 조사 실시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결정
- 직무수행태도 평정 감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5.0범위 내(근무성적평정서상 적용)
 - 감점 사유 :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직위해제, 훈계, 주의, 기타 복무상태 불량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1- 1230호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2월 23일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교육관, 전통숙박체험관, 전통음식체험관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통문화체험관의 위치를 규정함 (안 제2조)
 -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7 일원

- 나.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시설 : 전통문화교육관, 전통음식체험관, 전통숙박체험관 등
 - 사업 : 전통문화교육, 전통음식체험, 전통숙박체험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 다. 전통문화체험관 휴관 및 개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등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바. 전통문화체험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부터 제13조까지)
 - 체험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함
- 사.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함(안 제15조)

3. 관계법령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1.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790-722)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전화 270-2066, FAX 270-2270)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 문화길 7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 1. 전통문화교육관
- 2. 전통음식체험관
- 3. 전통숙박체험관
- 4. 그 밖의 체험관 내 각종 시설 등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전통문화교육, 전통음식체험, 전통숙박체험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 2.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 3. 그 밖의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사용신청) ①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체험관의 시설물 보호나 그 밖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제9조(사용료 등)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7일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 2. 수탁조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이나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민간위탁사무 중 “문화예술과” 를 신설하고 같은 란 위탁 사무명에
 “1.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을 신설한다.

[별표 1]

사용료 기준(제9조 관련)

○ 시설 사용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고
숙박관	1실 / 1박	60,000원	□ 1실 수용인원 8명 □ 숙박시간은 입실(당일) 16:00 ~ 퇴실(익일)12:00
교육관 (강당 및 세미나실)	1실 / 1시간	20,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용신청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강좌)	
	사용기간	
	사용인원(명)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제 호		
사용신청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강좌)	
	사용기간	
	사용인원(명)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직인)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용신청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강좌)	
	사용기간	
	사용인원(명)	
	변경(취소) 사유	
	변경전	변경후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사용허가서

사용신청 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강좌)	
	사용기간	
	사용인원(명)	
사용료	사용료	납부기한
	산출내역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을 허가하오니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용신청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기간		
	반환대상인원(명)		
	반환사유		
	사용료 납부액		반환금액(원)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고 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11-114호

포항 도시계획시설(동빈부두정비 1단계사업)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 12.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동빈동 981-7번지 일원

2. 준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동빈부두일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 사업량 : L=1,290m, B=3~20m
 - 친수시설 L=970m, B=3~20m
 - 주차장(40호) : L=320m, B=8~20m
 - 도로정비(중1-30) : L=450m, B=2~2.5m

4.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5. 사업 시행기간

○ 2008. 10. 31 ~ 2011. 10. 1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동빈내항복원팀(27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고 제2011-115호

포항 도시계획시설(동빈부두정비 2단계)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 12.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번지 일원

2. 준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동빈부두일원 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
- 사업량 : L=466m, B=5~6m(친수시설)

3.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4. 사업 시행기간

- 2010. 6.29 ~ 2011. 9.1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동빈내항복원팀(27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1 -116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12월 22일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89-9외 17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6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89-9	20091201	행정구역명(구룡포읍)을 이용하여 구룡포길로 명명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3-9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6-11	20091201	행정구역명(구룡포읍)을 이용하여 구룡포길로 명명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2-4	20091201	행정구역명(구룡포읍)을 이용하여 구룡포길로 명명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14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111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37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72번길 7-1	20091201	일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72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242-40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78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195-12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1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363번길 9-17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6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9-22, 109-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7번길 25-1	20091201	포스코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9-25, 109-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7번길 25	20091201	포스코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9-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74-3	20091201	문화예술회관을 지나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4-9, 14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70번길 14-3	20091201	문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8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길 102	20091201	행정구역명(남성리)을 이용하여 남성길로 명명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2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545-11	20111220	운제산을 향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7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흥계길 13	20091201	행정구역명(흥계리)을 이용하여 흥계길로 명명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55, 556-3, 556, 55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칠강산단로 66번길 89	20111206	칠강산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99-8, 7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01	20091201	동해면의 일월사당이 있는 지역으로 "연오랑 세오녀"의 생활을 이용한 도로명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토지구획정리지구 30B 1-2L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 15번길 12	20091201	연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토지구획정리지구 30B 2-1L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 15번길 18	20091201	연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토지구획정리지구 30B 1-1L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 15번길 14	20091201	연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토지구획정리지구 30B 2-2L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 15번길 20	20091201	연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흥리 2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길 26번길 36	20091201	흥환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33-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140번길 3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11-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성로 67-9	20091201	옛 지명(중성)을 이용하여 중성로로 명명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57-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로 25번길 7	20091201	상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회양대로 1040	20091201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미래의 대도시 포항 발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3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해안길 24	20091201	송도동 해안에 위치한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16-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79번길 6-24	20091201	송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16-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79번길 6-20	20091201	송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2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56번길 56-1	20091201	송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2-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10번길 20	20091201	송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2-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10번길 20-1	20091201	송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시유	비고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1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65-4	20091201	행궁구역명(연일읍)을 이용하여 연일로로 명명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333-1, 3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 18-11	20091201	옛 지명(원서)을 이용하여 원서길로 명명	
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256-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55-18	20091201	세계적인 철강 도시 포항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35번길 6	20091201	동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6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71번길 38	20091201	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54번길 42	20091201	동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3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지명로53번길 3-8	20091201	지명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9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로9번길 13	20091201	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9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10번길 26-4	20091201	유강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 31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 117번길 45-12	20111215	원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지명리 69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지명로 145번길 17-4	20091201	지명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종명리 37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 250-9	20111202	옛 지명(원서)을 이용하여 원서길로 명명	
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매리 2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 1673	20091201	기림사를 지나 오천 용산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문화재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3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339	20091201	신라시대의 고철 오어사를 연결하는 도로로 문화재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5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341	20091201	신라시대의 고철 오어사를 연결하는 도로로 문화재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1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340번길 17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4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12-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340번길 15-1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17-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16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로 명명	
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17-3, 21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16-8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로 명명	
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17-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16-10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로 명명	
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17-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08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로 명명	
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17-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12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로 명명	
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6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06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로 명명	
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66-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02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로 명명	
5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66-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06-1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로 명명	
5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6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00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로 명명	
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600-11	20091201	오천에서 출생하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인명을 이용한 도로명	
6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0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600-5	20091201	오천에서 출생하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인명을 이용한 도로명	
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7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원로25번길 9-4	20111202	하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3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0	20091201	원동 남쪽에 위치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47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 284	20091201	남천을 따라 서쪽으로 이어진 도로로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4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종원로82번길 20-29	20111221	종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시유	비고
6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3-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69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6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0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70번길 7-1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6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06-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84번길 34-6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84번길 58-6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84번길 58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7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84번길 59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7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4-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84번길 57-2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5-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308번길 29-6	20111213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0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876번길 14-1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7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길23번길 21-26	20091201	청림동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왼
7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312, 679-2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906번길 27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7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84-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876번길 10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7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84-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876번길 8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
7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320-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64-2	20091201	행장구역명(읍내리)을 이용하여 읍내길로 명명	
7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320-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62-5	20091201	행장구역명(읍내리)을 이용하여 읍내길로 명명	
8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885, 887, 890, 889, 88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로 526	20091201	행장구역명(방산리)을 이용하여 방산길로 명명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시유	비고
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7, 118-1, 11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성길 18	20091201	장기읍성을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615-1, 61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길 59번길 50	20091201	죽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100-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130-2	20091201	문화예술화관을 지나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8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20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18-1	20091201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 4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8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437-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2번길 239-31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437-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2번길 239-33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5-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 129번길 10	20091201	해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 129번길 10-1	20091201	해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773-1, 773-4, 773-14, 773-13, 773-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로 1154	20091201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9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576-28, 576-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90	20091201	해맞이광장 앞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38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로 1800	20091201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9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54-5, 5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46번길 34	20091201	해맞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59-9, 5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46번길 18	20091201	해맞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88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99-8	20091201	해맞이광장 앞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9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천길 9-17	20091201	옛 지명(대천)을 이용하여 대천길로 명명	
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6-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 43번길 3	20091201	효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시유	비고
9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 45번길 30	20091201	효성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 59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념길 107-8	20111207	기계의 남쪽지역으로 행정구역 명칭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9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천길 168	20091201	내단천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35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30	20091201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1071-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582	20091201	행정구역명(기계면)을 이용하여 기계로로 명명	
1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아리 1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아리길 292-71	20111215	행정구역명(학아리)을 이용하여 학아리길로 명명	
1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6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57번길 20	20091201	기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대곡리 15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록면 306번길 122	20091201	기록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3,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울산리 1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록면 울산남길 143	20091201	행정구역명(울산리)과 방위(남)를 이용하여 울산남길로 명명	
10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울산리 88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록면 울산남길 137-1	20091201	행정구역명(울산리)과 방위(남)를 이용하여 울산남길로 명명	
1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탑정리 50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록면 비학산길 75-10	20111221	포항의 명산 비학산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686-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47번길 3-2	20091201	서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686-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47번길 3-3	20091201	서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686-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47번길 3-4	20091201	서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686-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47번길 3-6	20091201	서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686-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47번길 3-5	20091201	서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88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47번길 33	20091201	서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갈리 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3378번길 68	20091201	동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7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상리 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화로 823-21	20090730	학이 넘어가는 황상인 포항의 명산 비화산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145번길 35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48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158번길 5-9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158번길 29-4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4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158번길 29-6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9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42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1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242번길 15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8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흥로402번길 61	20091201	상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36-1, 4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안길 192-1	20091201	옛 지명(대안골)을 이용한 도로명	
1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0-1B 3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55번길 18	20091201	우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1B 11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51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로 명명	
1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2B5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48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로 명명	
1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3B 14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56번길 22	20091201	우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3B 4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56번길 4-7	20091201	우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3B 4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56번길 4-9	20091201	우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3B 9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933번길 8-16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 1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57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 1L, 15B 2L, 15B 4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1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 4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1-1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6B 1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0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4B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933번길 20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6B 4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22번길 3-3	20091201	우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6B 5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24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7B 5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22번길 7	20091201	우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5-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98번길 9	20091201	법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61번길 36-7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4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2	20091201	행정구역명(양덕동)과 방위(남)를 이용하여 양덕남로 명명	
1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1-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17번길 36-11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65-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259번길 24-12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69-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1번길 30	20091201	법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8-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8번길 49	20091201	죽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3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연봉신길705번길 83	20091201	연봉신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651, 6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연봉신길 840	20091201	포항의 최고봉 연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곡리 1014-10, 101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기록로 1816-21	20111212	기록면과 죽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1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곡리 72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1827번길 9-30	20091201	죽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3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4225-24	20090730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성지가 있는 기계면 문성리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사리 209, 1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병보천로 457-95	20111129	병보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27B 4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01번길 2-31	2011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29B 7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26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29B 9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30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30B 3L 외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18-8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34B 1L, 34B 2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57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36B 1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158번길 6	20091201	우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산21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배화로1860번길 62-81	20091201	배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31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시방공원길 127-8	20111221	시방공원이 조성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27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로159번길 13	20091201	월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중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293-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로160번길 10-1	20091201	월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6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694-67	20090710	동쪽바다를 따라 이어진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장진리 17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1957-31	20091201	북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지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22B 4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96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24B 1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01번길 2-7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25B 2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06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28-1B 8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97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1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34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호로203번길 17	20091201	상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 30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호로 444	20091201	옛포항의 8대 호수(아호, 두호, 환호)를 연결하는 도로 지역 사성을 이용한 도로명	
1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국강리 2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513번길 139-26	20091201	한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2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39	20091201	옛 지명(중성)을 이용하여 중성로로 명명	
1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령리 2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앞전로85번길 7-80	20091201	앞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58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106번길 28-80	20091201	한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곡리 17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곡리182번길 51	20091201	상곡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곡리 17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곡리182번길 53	20091201	상곡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8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22-16	20090710	동쪽바다를 따라 이어진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245-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475번길 12-8	20091201	동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1209-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13	20091201	칠포해수욕장을 향하는 도로로서 행정구역 명(칠포리)을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고시 제2011-11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868-1번지 외 2필지 지방하천(초곡천)내에 포항~영덕간 가스주배관 건설사업에 따라 가스배관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 항 시 장 (인)

2011. 12. 23

□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자	비고
	읍면동	지번		일시	영구	일시	영구		
초곡천 (지방하천)	흥해읍 이인리	868-1번지 외 2필지	배관 매설	1,963	147	2011. 12. 23 ~ 2012. 12. 22	허가일 로부터 영구	한국가스공사 대표 주강수	

포항시 고시 제2011-119호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번지 일원의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2월 23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연오랑 세오녀 문화공원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번지 일원	-	증)82,637	82,637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연오랑 세오녀 문화공원	•주제공원신설 A = 82,637㎡	동해안 신라문화권 관광클러스트 연계 및 연오랑 세오녀 신화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해 문화공원 신설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도입시설물		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계			82,637	100.0	2,360	3,070	
공원시설 소계			35,896	43.5	2,360	3,070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연오랑뜰, 도로	6,602	8.0	-	-	
	조경 시설	해초뜰, 신라뜰, 물꽃길, 홀림뜰	6,343	7.7	-	-	
	휴양 시설	일월쉼터, 전망쉼터, 바다쉼터, 나루쉼터, 일월대	1,249	1.5	150	150	
	교양 시설	일본뜰, 한국뜰, 귀비고, 신라마을, 철예술뜰	16,511	20.0	1,980	2,560	
	편익 시설	연오주차장, 세오녀뜰, 화장실	5,191	6.3	230	360	
녹지	녹지		46,741	56.5	-	-	

나. 도로 결정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합 계			1.5~ 8.0	1,688	4,863				
소로	2	1	8.0	54	446	진입로	입구	연오주차장	가각포함
소로	3	1	6.0	157	946	주관람로	연오랑뜰	귀비고	가각포함
소로	3	2	4.0	42	169	주관람로	귀비고	세오녀뜰	가각포함
소로	3	3	3.0	418	1,275	보조관람로	연오랑뜰	귀비고	가각포함
소로	3	4	3.0	139	418	보조관람로	소로3-1	세오녀뜰	가각포함
소로	3	5	3.0	63	189	보조관람로	세오녀뜰	소로3-7	가각포함
소로	3	6	2.0	35	75	시설간연결로	부지경계	연오랑뜰	가각포함
소로	3	7	2.0	176	361	시설간연결로	소로3-7	소로3-3	가각포함
소로	3	8	2.0	47	98	시설간연결로	귀비고	소로3-5	가각포함
소로	3	9	2.0	55	114	시설간연결로	소로3-3	소로3-1	가각포함
소로	3	10	2.0	44	88	시설간연결로	부지경계	바다쉼터	가각포함
소로	3	11	1.5	260	383	산책로	연오랑뜰	일월대	가각포함
소로	3	12	1.5	157	238	산책로	일월대	소로3-3	가각포함
소로	3	13	1.5	41	63	산책로	소로3-6	부지경계	가각포함

다.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82,637	2,360	3,070			
		시설면적		35,896	2,360	3,070			
도로 및 광장	소 계			6,602	-	-			
		도로		4,863	-	-			
	1-1	연오랑뜰	임곡리 123전	1,739	-	-			
조경 시설	소 계			6,343	-	-			
	2-1	해초뜰	임곡리 151전	2,898	-	-			
	2-2	신라뜰	임곡리 152전	1,751	-	-			
	2-3	물꽃길	임곡리 161전	282	-	-			
	2-4	홀림뜰	임곡리 163입	1,412	-	-			
휴양 시설	소 계			1,249	150	150			
	3-1	일월쉼터	임곡리 123전	153	30	30	1층, 1동		휴게정자
	3-2	전망쉼터	임곡리 156전	135	-	-			
	3-3	바다쉼터	임곡리 171전	203	40	40	1층, 1동		휴게정자
	3-4	나루쉼터	임곡리 164전	486	30	30	1층, 1동		휴게정자
	3-5	일월대	임곡리 129-9입	272	50	50	2층, 1동		휴게정자
교양 시설	소 계			16,511	1,980	2,560			
	4-1	일본뜰	임곡리 123전	3,038	200	200	1층, 1동		일본정자 (다정)
	4-2	한국뜰	임곡리 146입	3,305	300	300	1층, 2동		일월사당 팔각정자
	4-3	귀비고(전시관)	임곡리 162전	2,916	580	1,160	2층, 1동		전시관
	4-4	신라마을	임곡리 158전	4,575	900	900	1층, 8동		체험관
	4-5	철예술뜰	임곡리 168전	2,677	-	-			
편의 시설	소 계			5,191	230	360			
	5-1	연오주차장	임곡리 123전	3,758	-	-			
	5-2	세오녀뜰	임곡리 150전	822	130	260	2층, 1동		매점
	5-3	화장실	임곡리 143전	611	100	100	1층, 1동		화장실
		녹지면적		46,741	-	-			
녹지		녹지		46,741	-	-			

4.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
(도면 실음 생략)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1-12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12.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산3-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
- 명칭 : 동해리조트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 성명 :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4. 사업계획 내용

- 도로개설
 - 소로1-2호선 L=345m, B=10m(기존도로확폭)
 - 소로2-1호선 L=679m, B=8m (기존도로정비)
 - 소로2-2호선 L=184m, B=8m (도로개설)
- 사업기간
 - 당초 : 2011.1.25 ~ 2011.12.31
 - 변경 : 2011.1.25 ~ 2012.7.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화진	산3-25	임	438	419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주) 경남은행			
2	화진	산3-24	임	7,489	1,993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주) 경남은행			
3	화진	산3-31	임	2,451	110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	영우개발 (주)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신한은행	근저당	
4	화진	산3-30	임	1,336	200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	영우개발 (주)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신한은행	근저당	
5	화진	산3-23	임	255	240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주) 경남은행			
6	화진	산2-6	임	377	287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주) 경남은행			
7	화진	산52	구	1,124	15		국 (건설 교통부)			
8	화진	866	답	231	62	화산리	김기수			미등 기
9	화진	893	구	1,609	217		국 (농림부)			
10	화진	산2-5	임	35,707	540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	영우개발 (주)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신한은행	근저당	
11	화진	산2-2	임	198,957	9,954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	영우개발 (주)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1-1224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포항 송도동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57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 0 1 1, 1 2, .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 2. 공람일시 및 장소 : 포항시청 도로과 (09:00 ~ 18:00)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소로3류457호선	포항시 남구 송도동 311-318 일원 -시점:송도동 311-325 -종점:송도동 378-335	도로 개설 (L=180m, B=6m)	실시계획작성일 ~ 2012.12.31	포항시장

-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로과 도로시설2담당 ☎(054- 270-3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공고 제2011 - 1233 호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12. 23

공 인 공 고

- 1.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 : 2011. 12. 29
- 2. 등록 사유 : 인증기 공인 추가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용흥동 포항시북구청장인 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신규 등록
우창동 포항시북구청장인 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신규등록
장량동 포항시북구청장인 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신규등록